

「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(대표 발의)
- 제안일자 : 2024. 3. 5.
- 회부일자 : 2024. 3. 13.
- 상정일자 : 2024. 3. 14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의 인사청문회에 규정이 추가·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인사청문 직위 후보자를 정하고, ‘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’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인사청문 대상 규정(안 제3조)
-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 방식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- 인사청문회 절차 규정(안 제7조 ~ 제8조, 안 제12조)
- 인사청문대상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(안 제15조 ~ 제16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¹⁾가 신설되며 ‘인사청문회’에 관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인사청문 제도화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자질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임명의 정당성과 조직 내 지도력을 확보하고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본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인사청문 대상 직위)에서 조례로 위임받은 우리 군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정함.

1) 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

2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
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
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
② 지방의회는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안 제6조(인사청문 첨부자료)는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함께 경력, 병역, 재산, 체납, 범죄이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군수의 임명권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인사 검증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므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인사청문회 · 교섭단체 조례 제 · 개정 시 유의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3.9.22.시행)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·교섭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, 관련 조례 제·개정 시 유의사항을 안내함

□ 인사청문회(법 제47조의2)

- 인사청문회 대상은 「지방자치법」에 열거된 범위 안에서만 규정
 - 법률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, 상위법령 위임 없이 대상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음(법제처 의견23-0259, 23-0305)

- ▶ 서울특별시 행정1·2부시장(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)
- ▶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·서귀포시장(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)
- ▶ 「지방공기업법」상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(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)
- ▶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출자·출연기관장(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)
- ※ 기관장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실질적 직무와 권한으로 판단(23.9. 설명자료 참조)

- 조례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할 수 없음
 - 법률에서 단체장에게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, 상위법령 위임 없이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할 수 없음

[사례 1] 「지방자치법」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

제3조(인사청문 대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[사례 2] 해석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

제3조(인사청문 대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**요청한다**.

⇒ 일부 조례의 '요청한다'는 표현은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므로, 관련 조례 제·개정시 「지방자치법」의 문언을 존중하여 '요청할 수 있다'고 규정 필요

- 절차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음
 - 인사청문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(과태료) 등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